

인천지방법원 2024. 12. 18 선고 2024가단9241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2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
39.4㎡를 인도하고,

나. 5,4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10. 1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고,

다. 2024. 7. 28.부터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2. 적용법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 본문)

판사 박상훈

별지